

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제2기 위원 모집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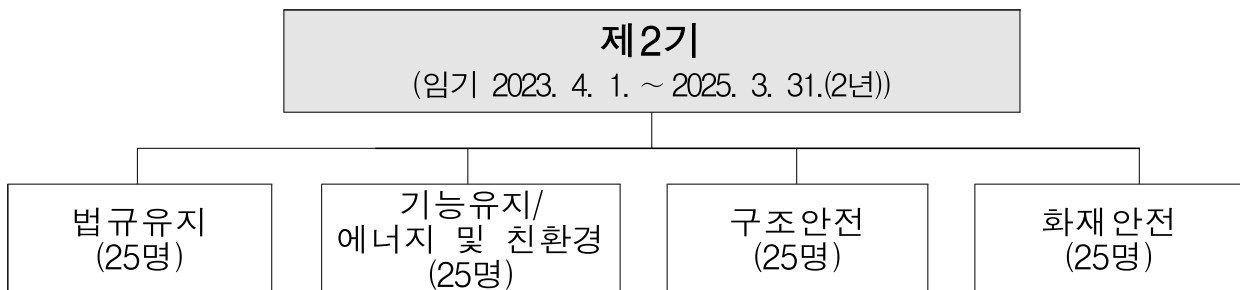
(건축시설관리실, '23. 1. 30.)

□ 목적

- 「건축물관리법 제50조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업무 수행('20.5)
- 상기 관련하여 국토안전관리원 「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운영규정(안)」 제10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제2기위원을 위촉하고자 함

□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구성

- 평가위원회 구성 계획
 - 평가위원 구성 : 100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
 - 분과구성 : 4개분야



□ 자격요건

- 건축물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
- 대학에서 건축물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
-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」에 따른 건축·토목·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건축물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
- 그 밖에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